

제28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12. 5.(서면심의)

□ 안건명 :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사업수행능력평가의 '주관적 평가항목' 평가시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및 관련사항을 평가하도록 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-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시행 전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 필요여부 검토가 필요함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
- 분 야 : 계약관리

항 목	검 토 의 견	비 고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	<p>용역 발주시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'주관적 평가항목' 평가 시,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후 관련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세부평가기준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 이를 통해 용역사의 공정·경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</p> <p>특히, 유착비리 적발 시 공동도급 참여사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일괄적 용하는 것은 용역사의 윤리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</p>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12월 1일

검토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
- 분 야 : 토목구조

항 목	검 토 의 견	비 고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(안)	1. 용역 발주 시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'주관적 평가항목' 평가 시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및 관련사항을 평가토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(안)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 2. 금회 개정안의 PQ평가 시 평가에 반영되는 대상이 유착비리 적발 업체이나, 유착비리의 행위자는 적발업체 임.직원이므로 개정 시행 전 용역업체에서 임.직원에게 계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을 전제로 일정기간 유예기간 필요여부도 검토가 필요함.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11월 30일

검토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
- 분 야 : 토목구조

항 목	검 토 의 견	비 고
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	<p>1. 건설기술용역업(설계 및 건설사업관리)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많은 업체가 금회 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부실설계 및 유착비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사료됨.</p> <p>2. 유착비리 적발업체를 2년간 재무국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의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됨.</p>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12월 일

검토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
- 분 야 : 토목시공

항 목	검 토 의 견	비 고
세부평가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평가기준(개정)_최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p246다음(마지막페이지)에 발행일 2000년 → 2023년로 변경 ○ 서울시 평가기준(개정)_최종 안 세부기준에 반영된 ‘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’ 내용은 적정하게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12월 01일

검토위원 : :